

법률 번역 이해를 위한 기호학적 접근 제안

윤 경 은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여러 특수 언어(special-purpose languages)¹⁾ 중에서 법률 언어(legal language)로 구성된 법률 텍스트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적인 텍스트라는 점에서 다른 텍스트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물론 자르체비치(Šarčević 1997: 11)의 법률 문서 구분 중 규범적(prescriptive), 기술적(descriptive), 처방적이면서 기술적인(hybrid) 텍스트²⁾에서 기술적인 텍스트는 전혀 규범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비(Harvey 2002: 179)에 따르면 설득적인(persuasive) 기능의 법률 텍스

-
- 1) 세이저(Sager 1990: 99, 1993:40)에 따르면 특수 언어란 “동일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정 목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 소통의 수단”이다. (Šarčević 1997: 9 재인용)
 - 2) 자르체비치(1997)에 따르면 규범적인 문서는 법, 규정, 계약서, 조약, 협정이 포함되며, 기술적이면서도 규범적인 텍스트로는 변론, 항소, 청원 등 소송 과정에 사용되는 문서와 판결문이 있고, 기술적인 텍스트로는 법률 자문, 법률 교재, 법률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트를 차치하고라도 규범적 법률 텍스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 받는 당사자에게는 규범적인 성격이지만 다른 나라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정보적 텍스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 법률 텍스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행동 규칙이나 규범을 담고 있는 법률, 법령, 구제, 협정, 계약, 조약 등의 텍스트를 법률 텍스트라 정의하고 동일한 텍스트 기능 하에 이러한 법률 텍스트를 번역하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두고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 텍스트를 번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충실성(fidelity)이다. 법률 텍스트에 있어서 충실성이란 시대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의가 내려질 수 있으나 이러한 충실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ST(source text, 출발 텍스트³⁾)에서 의도된 법적 효과(legal effects)⁴⁾를 TT(target text, 도착 텍스트)에서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 법률 텍스트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command), 해서는 안 되는지(prohibition),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permission)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허용되는지(authorization)를 규정하는 문서이기에(Šarčević 1997: 11) 법적 효과가 동일하게 생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이제까지 논의된 충실성 기반의 법률 번역 접근 방식이 간과하거나 그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것은 법률 번역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특정 문화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 언어는 특정 법률 제도(legal system)의 지배를 받는데(Weisflog 1987: 179-219) 이러한 법률 제도는 특정 사회나 국가의 역사적, 전통적, 관습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해온 결과물이다(Madsen 1995: 293). 법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도(original intent)를 다른

3) 통번역학에서는 ‘출발어 텍스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번역이 단지 언어의 전환일 뿐 아니라 문화의 전환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 통번역의 기초(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에서 ‘출발 텍스트’란 용어를 사용한 라이스(Reiß)와 페어메어(Vermeer)의 의견을 따라 ‘출발 텍스트’, ‘도착 텍스트’로 용어를 사용한다.

4) 폰(Poon 2005: 314)를 참조하면 많은 학자들(Lehto, L.; Schoroth, P.; Šarčević, S.; Shnell-Hornby, M.; Pochhacker, F.; Kaindl, K.; Garzone, G.)이 법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법률 제도하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번역 하거나 또는 각각 다른 법률 제도하에 적용되지만 동일한 의도를 가진 두 개의 법률 텍스트를 작성⁵⁾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적 효과(legal effect)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법률 개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법률 번역이란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속에서 발전한 상이한 법률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법률 용어⁶⁾에 대해 동일한 법률 개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개념을 담고 있는 법률 용어도 일반 언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기호체계⁷⁾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이해 없이 단독으로 이해할 수 없다.⁸⁾ 이를 기호학적 측면에서의 번역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면, 기호의 의미 작용⁹⁾은 그 기호가 내재되어 있고 발현되는 코드 체계 안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경계를 가로질러 상호기호학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법률 문서 번역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¹⁰⁾ 이러한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법률 문서 번역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개별 번역 전략이나 방법, 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률 번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률 번역의 목적인 동일한 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

5) 자르체비치(1997: 112)에 따르면 두 개의 병렬 법률 문서(parallel drafting) 작성시 원본(original text)이란 없고 원 의도(original intent)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6) 여기에서 법률 용어란 정의된 법적 의미(legal meaning)을 담고 있는 용어를 의미한다. 자르체비치(1997: 73)는 법률 번역에서 의미(meaning or content), 효과(effect), 의도(intent)를 구분하고 있다.
 7) 오늘날 언어는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기호체계로 간주되고 있다(Chandler 2002/2007: 38)
 8) 케(Kc 1999: 134), 슈넬 혼비(Snell-Hornby 1990: 80) 참조
 9) 기호학은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의 구분에 따르면 크게 의미작용의 기호학과 의미소통의 기호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후자는 흔히 정보(전달)이론 등에서 얘기되는 바와 같은 어떤 의미/신호 전달의 경로와 이와 관련한 것이고, 이에 반해 전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전달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10) 외교통상부가 2009년 12월 31일 기준 발표한 ‘정부 수립 이후 조약 체결 건수 추세(발효 기준)’을 보면 증가 추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korea/activities/index.jsp?menu=m_30_50_20)

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서 기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률 번역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고, 법률 번역에 대한 이제까지의 대표적인 논의를 고찰한 후, 법률 번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호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사례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2. 법률 번역

법률 언어(*legal language*)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른 견해차가 존재한다. 가브르(*Gabr 1999*)는 엄격히 말해 법의 언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의 한 분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규범이나 규칙들은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자르체비치(*1997: 9*)는 법률 언어를 ‘법률 전문가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제마흐(*Gémar 1995*)는 법률 언어를 생산 주체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 상업, 기업, 학술 분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Šarčević 1997: 9*에서 재인용), 트로스보그(*Trosborg 1997: 20*)는 사용 상황에 따라 법언어, 법정언어, 법률 교재에서 사용하는 언어, 변호사의 의사 전달로서의 언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대화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법률 언어를 법과 관련한 모든 언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법률 언어가 ‘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즉, 법률 언어의 법적 측면으로 인해 법률 텍스트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률 언어로 쓰여진 법률 텍스트의 특징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법률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적 성격이 있어 해당 텍스트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텍스트의 기능은 텍스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성격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Harvey 2002: 179*). 일반 텍스트와는 달리 법률 텍스트는 그 안에 담긴 명령, 규범, 규정 등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내용이 그 어느 텍스트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지선 2009: 66*).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법률 텍스트를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

행되어야 하는 일은 해당 법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률 번역은 시스템 내에서 행해지는, 시스템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 번역이다(신지선 2009: 67). 마틸라(Mattila 2006)에 따르면 법률 언어란 사용되는 법체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특정 사회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률 언어를 이루고 있는 법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법률 번역에 서만 이러한 상이한 시스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법률 텍스트의 규범적 특징과 이행되었을 때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법률 제도의 이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체계 이해가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이한 법체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있는 변호사가 법률 번역을 잘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와 표현, 개념과 문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옮기는 언어능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티어스마(Tiersma 1999)는 법률 문장은 길고 복잡하며, 등위접속사로 나열되어 있고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의미의 중복, 부정적 명제, 비인칭 주어 사용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이 언어적·비언어적 고려가 필요한 법률 텍스트를 번역할 때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번역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세울 때, 법률 번역의 목적인 동일한 법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 번역이론을 바탕으로 삼거나 수정한 이론을 사용해 왔다. 그 중에서 법률 번역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전통적으로 직역과 의역, 기능주의적 번역이론을 들 수 있다.

3. 기존 논의

3.1. 직역 vs. 의역

사실 오랫동안 법률 번역은 ‘직역(literal)¹¹⁾’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11) 직역은 출발 텍스트 단어를 문자 그대로 도착 언어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엄격하게

정확한 번역이란 ST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초기 법률 학자들은 직역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법률 역사학자인 필립 헵(Philip Heck)에 따르면 법률 번역의 규범적인 성격으로 인해 엄격한 직역이 중세 법률 번역자들 사이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율로 작용했다(Šarčević 1997: 26). 디디에(Didier 1990: 280, Šarčević 1997에서 재인용)는 법률 번역시에는 문자 그대로의 축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이스플로크(Weisflog 1987: 191, Šarčević 1997에서 재인용)도 텍스트 종류와 기능에 상관없이 축어역을 옹호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법률 번역이란 언어적 전환의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Tallon 1995: 342; Crépeau 1995: 51-53, Šarčević 1997: 55에서 재인용)

그러나 언어표현의 형식이나 축자적 의미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직역은 법률 번역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규범적 성격을 가진 법률 번역의 주된 목적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번역된 법률 텍스트를 실제 관련 행위자가 적용했을 때 생산되는 법적 효과가 ST와 동일하게 나타났을 때 해당 법률 번역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형태와 의미가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 직역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발전한 구조와 체계, 개념이 다른 법언어가 담고 있는 법적 효과를 동일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직역에 바탕을 둔 법률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전문용어(terminology)에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조 언어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작업으로 간주되어 법률 번역이란 변환(transcoding)하는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게 되었다. 법률 텍스트의 단어와 텍스트의 의미는 특정 법률 제도 또는 법률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번역은 근본적으로 법률 제도를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번역에서 소위 ‘등가(equivalent)’를 찾는 과정이 단순히 ‘등가어’를 대응시켜주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르체비치(1997: 229)는

는 출발 텍스트의 문법 형태와 단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직역’은 통사적인 형태까지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strict literal translation’과 기본적인 변형(통사 구조)은 허용하는 ‘literal translation’ 모두를 지칭한다.

말한다.

직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률 번역도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직역보다는 의미가 통하는 의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박스(Covacs 1982: 86, Šarčević 1997에서 재인용)은 법률 번역의 목적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비(2002: 180)는 ‘번역’은 필연적으로 번역사의 ‘해석’이 포함되는 작업으로 법률 번역에서도 번역사는 단순히 등가어를 제공하는 “이중 언어 타이피스트(bilingual typist)”가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text producer)”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법률 텍스트의 해석은 실제로 해당 법률 텍스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자의 몫으로서 의도적인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법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닌 법문을 대립적으로 해석하는 관계에 있는데다 ‘번역사 자신의 전문적 권한의 한계를 넘는 번역을 할 가능성을 내포’(Garzone 2000: 397, 배만호 2009에서 재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기능주의 이론

직역과 의역이라는 양분된 개념을 동일한 법적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번역의 이론적 토대로 삼기에는 한계점이 명백히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이론으로 기능주의 번역이론이 법률 번역 논의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시스템이 법률 시스템에 점차 통합되어 가고 다중 언어국가에서 동등한 언어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률 번역에 대한 실질적 이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소통과 실용적 요소에 중점을 둔 기능주의 번역이론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Garzone 2010: 395).

기능주의의 스크포스 이론은 법률 번역이 목적 중심(purpose-oriented)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 페어메어의 스크포스 규칙에 따르면 TT는 도착 언어(Target Language, TL) 문화권의 스크포스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번역자는 ST의 번역 이유와 TT의 번역 기능을 이해하고 번역해야 한다. 또한 TT는 텍스트 내 결속성(intratextual coherence)을 가져 수신자가 TT의 내용을 이

해할 수 있어야 하고 TT와 ST간에는 텍스트간 결속성(intertextual coherence)이 있어 ST의 정보와 TT의 정보가 합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TT의 최종 목표와 그 기능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텍스트 내 결속성과 텍스트간 결속성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스코포스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인 “모든 행위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 법률 텍스트의 경우에는 항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는다(배만호 2009: 168).

동일한 법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스코포스 이론은 법률 번역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듯이 보인다. 사실, 스코포스 이론 관련하여 해당이론을 철저하게 목표텍스트 중심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동시에 ST는 중립적인 정보제공을 할 뿐이며 이를 옮기는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극단적인 직역에서부터 극단적인 의역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 어느 쪽이든지 목적에 따라 행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번역에서는 동일한 법적 효과 생산이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고, 목적에 따른 행위, 즉 번역 방식은 법률 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T에 대한 의미와 형식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다. 다시 말해, 번역 방식은 동일 텍스트 내에서 때로는 최대한의 의역이면서 때로는 최대한의 직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목적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기 보다는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 법률 번역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스코포스 이론으로 법률 번역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른 텍스트와 구별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스코포스 이론을 법률 번역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Fluck 1985: 136; Soffritti 1987; Trosborg 1994; Madsen 1997, Garzone 2000에서 재인용)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법률 번역을 하는 번역사가 가장 영향을 받는 법률 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코포스 이론으로 충분히 강조하기란 부족한 감이 있다. 매드슨(Madsen 1995: 291)은 법률 텍스트 번역 모델을 제안하면서 법률 번역을 하는 번역사는 번역사 범주(translator's universe)와 텍스트 범주(textual universe), 법률 범주(legal universe)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신지선 2009: 67). 법률 텍스트에 기술된 행위가 실제로 행해지는 가장 큰 범주인 법률 범주, 그러한 행위를 기술하고 한정하는 텍스트 범주, 법률 행위를 기술한 텍스트를

실제로 번역하는 번역사 범주가 번역사의 번역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번역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체계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법률 번역에 있어 법 제도의 이해 없이는 법률 텍스트를 번역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이러한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스킴 이론으로 설명하기란 부족해 보인다. 사용되는 상황에서 텍스트가 의도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킴 이론이기에 목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법률 번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층위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에는 부족하다. 즉, 다른 번역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협상과 선택, 의사결정의 과정인 법률 번역을 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통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달성하고, 번역사의 법률 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까지 필요한 법률 번역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 과연 존재하는가 한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기호학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4. 기호학적 접근

기호학¹²⁾은 기호의 존재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문이다(송효섭 2013: 19-22). 에코의 구분에 따르면 기호학은 크게 의미작용과 의미소통의 기호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후자는 어떤 의미나 신호 전달의 경로에 대한 것이고, 전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전달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사회적인 제현상들은 ‘의미’라는 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기호학 개념을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 피스(Pierce)와 소쉬르(Saussure)를 비롯하여 엘름슬레브(Hjelmslev), 방브니스트(Benveniste), 그레

12) 기호학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호(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텍스트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호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텍스트를 이루고 그 텍스트에 대한 의미의 해독은 왜 기호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마스(Greimas), 바르트(Barthes)에서 에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호학 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비슷한 개념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시각에서 기호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기호학’이란 범주에서 수많은 기호학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기호학 이론들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호학자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특정 기호학자의 시각보다는 기호학이란 학문의 바탕이 되고 기호학자들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여 법률 번역의 이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4.1. 기표와 기의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기표와 기의,¹³⁾ 즉 지시하는 것(signifier, signifiant)와 지시를 받는 것(signified, signifie)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여기에서 바로 내재성과 차이(difference)라는 중요한 두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호는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구별작용이 낳은 결과이다. 즉, 기호는 그 기호가 들어 있는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 내재적 법칙으로서의 구조는 그 구조 밖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형성된 기호¹⁴⁾가 텍스트¹⁵⁾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13) 엘름스레브는 기호를 표현과 내용으로 나눈 후 다시 각기 형식과 실질로 나누었고 방브니스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소쉬르가 말한 것처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분류나 어느 곳에(자의성은 결합의 동기와 시초에, 필연성은 결합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냐에 상관없이 근원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서정철 1998: 478). 아막케르(Amacker 1975: 82-4)에 의하면, ‘자의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이며 역사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한다. 기호가 자의적이라는 것은 기호와 현실 사이에 불가분의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언어가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화자들간의 ‘주관 상호성’ 즉 ‘사회적 동의’에 의거한다(전성기 2007에서 재인용).

14)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단위로서의 기호를 말한다. 문장이나 절과 같이 복잡한 구조적 형태를 보일 때도 있고,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서정철 (1998: 137-139)참조

15)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텍스트란 가장 확장된 언어학적 단위이다.

가진다는 명제를 법률 번역에 적용해 보면 특정 법률 용어의 표현과 의미는 자의적 관계에 관한 원리로서 이 둘의 관계가 자연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 용어의 번역은 반드시 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문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laimed invention: (a) is sufficiently supported by its disclosure if the disclosure allow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extend the teaching therein to the entire scope of the claim, thereby showing that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had not recognized and described or possessed on the filing date; (Paragraph 10(a) of Article 18.8,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청구된 발명의 공개가 그 기술분야에 숙련된 인에게 그 지침을 청구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거나 기술하지 아니한 대상이나,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18.8조 10항 가호)¹⁶⁾

위 예문 1을 보면, ‘the teaching therein’을 ‘그 지침’으로 번역했으나, ‘그’와 ‘지침’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단어의 기표를 옮기는 작업은 충실히 이행했으나 기표가 가지고 있는 기의를 앞 뒤 기호 간의 의미차이를 통해 찾으려는 노력이 부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어본의 ‘possess’를 ‘소유’로 번역했는데 이는 문장 내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possess’ 단어의 뜻은 ‘소유’가 맞지만, 이 조항에서 실제로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발명의 완성’을 의미한다. 발명을 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완성된 발명의 내용을 서류에 설명(describe)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본에는 ‘described’와 ‘possessed’가 ‘or’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한글본을 따를 경우, 출원인은 출원 당시에 소유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영어본에 따르면 출원 당시 출원 대상을 소유할 필요까지는 없고, 발명을

1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번역 오류 예문에서 발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35818

완성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¹⁷⁾

즉, 위 예시는 기호의 기의는 실제로 그 기호가 사용되는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는 해당 구조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며, 또한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 또는 비교를 통해 생겨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계열체와 통합체

소쉬르는 의미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표들 간의 차이를 통합적(syntagmatic) 차이와 계열적(paradigmatic) 차이로 구분했다. 통합적 관계는 수평축으로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에서 기의의 관계는 서로 인접하는 용어들 사이의 차이로 나타날 때 통합적으로 가능하다. 즉, 통합체는 하나의 문장과 같은 연쇄적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계열적 관계는 수직축으로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언어 체계에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이 가지는 교환적인 속성을 중요시한다. 통합적 관계는 같은 텍스트 안에 공존하는 다른 기표들을 텍스트 내적으로 지시하고 반면 계열적 관계는 텍스트에 부재한 기표를 상호 텍스트적으로 지시한다 (Saussure 1983: 122). 우리는 끊임없이 계열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언어 기호들을 선택한다. 이때 계열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기호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기호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계열체 속에서 다른 것 대신 어떤 기표를 고르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원하는 방향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Chandler 2002/2007: 85).

쉽게 말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체계는 동일성분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따라서 다양한 선택의 폭을 지니며, 그것이 횡적으로 연결될 때는 문장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맡는 통합체가 된다(서정철 1998: 374-375). 계열체가 대체와 치환의 관계라면 통합체는 추가와 생략의 관계이다. 통합체적인 축을 통해 번역사는 ST의 통사적 구조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계열체적인 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여러 용어의 차이를 구분하여 TT의

17)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번역 오류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35818

어떤 법률 용어가 ST 용어를 가장 잘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¹⁸⁾>라는 기의를 가진 기표 /기소/가 영어로 번역될 때에는 ‘indictment’, ‘prosecution’ 또는 ‘suing’¹⁹⁾의 계열체 축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번역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은 문맥 속에서 다른 기호들과의 구별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열체적인 축에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는 일은 법률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 이긴 하지만 다른 번역과 비교해서 그 선택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법률 번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통합체적인 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통합체와 관련한 예문이다.

예문 2)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deriving from a specific provision found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to which Korea is a Party and according to which Korea may amend any measu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obligations on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in thes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ANNEX 7-C List of MFN Exemptions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번역1)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 대우를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대한민국은 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개정 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모든 조치를 개정할 수 있음 (한-EU 자유 무역협정의 부속서 7-다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²⁰⁾)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참조

19) 형법에서 ‘indictment’는 “a statement of charges”를, ‘prosecution’은 “the court process ensuing from those charges”, 그리고 ‘suing’은 “a civil suit between two individuals”을 가리킨다. <http://www.thefreedictionary.com> 참조.

20) 한미 FTA 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번역 오류 예문에서 발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35818

번역2)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2014년 7월 1일 확인한 한-EU 자유 무역협정서 부속서 7-다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의 현재 번역)

위 예문 2를 통합체적인 축으로 보면, ‘only’와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가 번역1)에서 생략된 것을 차치하더라도 문장의 통사적²¹⁾인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동사가 뒤쪽에 위치하여 번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문화되지 않은 문장은 해석의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번역1)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의 ‘대한민국’은 두 개의 목적절(1.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 대우 2. 국가에 부여하는 모든 조치)을 이끌고 있어 이해가 어렵다. 또한 두 번째 문장에서, ‘~개정이 그 협정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와의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모든 조치를 개정~’에서, 주어 대한민국이 동사 ‘개정할 수 있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주어인 ‘개정’을 두 번 반복시켜 문장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방교영 외 2011: 36).

2014년 7월 1일 확인한 번역2)는 번역1)에서 생략된 ‘only’와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가 ‘그 개정직전에 존재하였던’과 ‘~에서만’으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다. 자유무역협정 번역 오류에 대한 논란 이후 수정이 거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문장 자체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당 조항 자체가 워낙 수수께끼 같긴 하지만²²⁾ 문장만을 놓고 봤을 때 번역1)에서 발견된 통사적인 오류는 완전히 수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 상이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 사이의 번역에서 SL통사구조를 TT에 가져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수 있으나, 통합체의 관계는 Hielslev의 견해에 의거한다. 또한 같은 통사 구조를 따를 것인가는 이를 통해 동일한 법적 효과가 달성 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2) 송기호 변호사의 글 참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5740>

‘대한민국이’와 ‘어떤 조치의 개정이’라는 두 개의 주어절이 있고, 각 주어와 관계를 맺는 동사가 어느 것인지 파악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엘름슬레브의 견해에 의거하여 원문에 있는 통합체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연대 관계(주어와 동사의 관계),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그 반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단순 내포의 관계(주어와 상황보어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필수적이 아닌 단순 결합의 경우(명사와 형용사 내지 부사와 부사의 관계)를 확인하며(서정철 1998: 375-376) 번역했다면 번역1)과 2)에서 보이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4.3. 코드(code)

통번역학에서 일반적으로 ‘코드’ 또는 ‘코드화’는 ST속에 코드화되어 있는 의미를 도착어 코드(언어)로 새로이 코드화(새로이 표현)하여 도착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번역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인다. 그러나, 기호학에서 ‘코드’란 한마디로 ‘기호를 운용하는 규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송효섭 2013: 127).

기표(signifiers)와 기의(signifieds)를 특정 영역 내에서 결합시키기 위한 관습의 과정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코드(code)라는 점에서(Chandler 2002/2007: 245), 코드는 틀을 제공하여 기호가 의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Stuart Hall 역시 “코드의 작용 없이는 어떤 담론도 이해가 불가능하다(Hall 1980: 431)”고 강조했다. 코드화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코드의 관습이 확립되어가는 역사적, 사회적 과정(Chandler 2007: 371)”을 말하고, 바꾸어 말해 의미작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글에는 한글만의 음운 규칙과 문법이 있으니 이것을 ‘한글의 코드’라고 부를 수 있고(송효섭 2013: 127), 영어에는 영어만의 코드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한글과 영어를 아우르는 상위의 일반적 코드 역시 있을 수 있으며, 예코의 코드화의 구분처럼 ‘보편적 코드’와 ‘하위 코드’²³⁾, ‘과대 코드화’와 ‘과소 코드화’²⁴⁾로 구분할 수도 있다. 코드라는 것은 텍스트 내의 규칙

23) 보편적 코드는 누구나 똑같이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고 하위 코드는 누구에게만 특수하게 의미가 해석되는 방식이다(송효섭 2013: 206).

24) 과대 코드화(overcoding)란 확실하고 보편적인 코드가 그보다 지엽적인 데 작용하여

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문화·사회의 규칙 등과 같이 여러 층위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작용과 코드화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코드화가 자의적 조작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려면 기호 사용자들에게 코드화된 것을 관습화시킬 필요가 있다(김경용 1994: 93). 즉, 각 언어는 현실을 자의적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분류하기에, 한 언어의 기의는 다른 언어의 기의와 동일할 수 없다. 만약 번역가가 번역을 할 때 텍스트에 개입해 있는 다층위의 ‘코드’의 개입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TT는 TT문화권에서 의미작용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의미작용을 할 수도 있다.

예문 3)²⁵⁾

18세인 신고대상자는 제1국민역 편입사항 (헌법재판소 판례집a 2007-1: 718)

As for a Person Subject to Reporting who is 18 years old, the information regarding his enlistment in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헌법재판소 영문판례집a 2007: 8)

위의 예문 3은 ‘코드’의 개입을 의식한 번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잘 보여준다. 우선 ‘18세’를 ‘18 years old’로 번역한 것은, 한국에는 세는 나이²⁶⁾라는 문화 코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번역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문화코드를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문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코드를 인식하고 번역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제1국민역’의 번역도 한국에만 존재하는 체계라는 점을 인식하여 번역하였다. 즉, ‘제1국민역’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며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코드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하고, 과소 코드화(undercoding)란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송효섭 2013: 208-210).

25) 손수연(2011: 31)의 예문을 발췌

26)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쳐서 함께 세는 나이를 일컫는다.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뜻한다.²⁷⁾ 그러나 ‘제1국민역’이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응되는 표현을 영어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기의를 파악하여 예문에서는 ‘in eligible conscription status(적합한 징병 상태로)’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손수연 2011: 31).

예문 4)

A Party may also provide that fraud, misrepresentation, or inequitable conduct may be the basis for revoking a patent or holding a patent unenforceable. (Paragraph 4 of Article 18.8,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각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18.8조 4항)²⁸⁾

위 예문 4는 위의 예와는 반대로 상이한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오역을 보여준다. 예문에서 ‘inequitable conduct’는 ‘불공정 행위’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미국 특허 제도에만 있는 특수한 개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역이 발생했다. 해당 용어는 가령 출원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종래 기술을 숨기거나, 최선의 발명 형태를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inequitable conduct’를 정직 의무(duty of candor) 위반이라고도 한다. 이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적당하다.²⁹⁾ 기호는 그 기호가 작용하는 코드 내에서 기의를 가지고 그 기호가 사용되는 사회체계나 문화체계가 가지는 규약의 체계를 따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위의 예들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위한 법률 번역의 충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호학의 기표와 기의,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개념을 적용

27) 병역법 [법률 제12684호]참조

28)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번역 오류에서 발췌한 예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35818

29)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번역 오류에서 발췌하여 재 정리한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35818

한 것이고, 법률 텍스트 번역은 상이한 법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을 위해 코드라는 개념을 빌려왔다. 사실 위의 예시들을 앞서 설명한 직역과 의역, 기능주의 이론의 측면에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론으로 법률 번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호학적 접근법이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5. 나가는 말

법률 번역은 국제화로 인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번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 즉 상이한 법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률 언어로 인해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률 번역에 대한 다양한 번역 접근법이 있었지만 고유한 특징을 가진 법률 번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법률 번역은 다양한 체계가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기호학적 환경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기호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물론 앞서 설명한 기능주의와 기호학이 완전 별개의 이론이 아니다. 구조주의에서 출발하는 체계언어학이 텍스트 언어학과 발화행위이론이라는 개념 도구를 창출하고 문화이론과 기호학은 언어를 통해 묘사하는 세계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을 환기시키면서 그 결과 행위이론에 기반을 둔 스크포스 이론을 탄생시켰다(박여성 2013: 8).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론을 놓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논의를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호학의 대표적인 개념, 주로 구조주의 기호학적 측면의 개념들을 통해 설명했던 앞의 몇 가지 예는 수많은 기호학자들이 같은 대상을 두고 각기 다른 맥락에서 논의한 방대한 기호학 측면에서 보면 아주 단편적일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번역을 기호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직역이나 의역, 그리고 기능주의 이론을 적용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넘어 법률 번역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법률 번역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충실성이란 결국 텍스트의 ‘정확한’ 번역을 이야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텍스트 상의 기호들이 지시하는 대상들이 무엇이고 또한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물론 이는 법률 번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번역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각해 볼 때 더욱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법률 번역의 정확한 이해는 법률 번역의 전략 및 교육적 모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대상 법률 텍스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호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기호학의 단면이 아닌 통합적인 측면에서 법률 번역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현 옮김 (2000) 『움베르트 에코: 기호, 개념과 역사』, 서울: 열린책들.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운찬 (2006) 「기호 상호간의 번역에 대해」, 『기호학연구』 20: 173-97.
- 남기심 (2001)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
- 박미정 (2009) 「시사만화 한일번역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온라인상의 4칸만화와 1칸만화의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박여성 (2013) 「기능주의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 방교영 · 신항식 · 배선경 (2011) 「한-EU FTA 협정내용 번역불일치의 사회기호학적 조망」, 『통번역학연구』 15(1) 1: 29-52.
- 배만호 · 배소민 (2009) 「국제 법률문서의 번역전략: 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161-81.
- 서정철 (1998) 『기호에서 텍스트로』, 서울: 민음사.
- 손수연 (2011) 「법률 문서의 특징과 번역 전략: 국제 협약과 판결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송효섭 (2013)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서울: 이숲.

- 신지선 (2009) 「법률텍스트 번역의 특성에 입각한 교육모델 제안」, 『통역과 번역』 11(1): 63-80.
- 전성기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국현 (2010) 「텍스트언어학에서 텍스트기호학으로」, 『독일문학』 115: 275-301.
- 이은희 (2009) 「법률 텍스트에 대한 국어 교육적 접근 방향」, 『텍스트언어학』 27: 31-58.
- Amacker, R. (1975) *Linguistique Saussurienne*, Geneva/Paris: Librairie Droz.
- Chandler, D. (2002/2007) *The Basics Semiotics*, New York: Routledge.
- Covacs, A. (1982) *La réalisation de la version française des lois fédérales du Canada*, Montréal: Linguatex et Conseil de la langue français.
- Crépeau, P. (1995) *La Transposition Linguistique*, Bruxelles: Brylant.
- Didier, E. (1990) *Langues et langages du droit*, Montréal: Wilson & Lafleur.
- Fluck, H. (1985) *Fachsprachen*, Tübingen: Francke.
- Gabr, M. (2001) 'Toward a Model Approach to Translation Curriculum Development', *Translation Journal* 5(2).
- Garzone, G. (2000) 'Legal Translation and Functionalist Approaches: A Contradiction in Terms?', *ASTTI/ETI*: 395-414.
- Gémar, J. (1995) *Traduire ou l'art d'interpréter*, Saint-Nicolas: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 Madsen, D. (1997) *A Model for Translation of Legal Text,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ll, S. (1980)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Media, Culture and Society* 2: 57-72.
- Harvey, M. (2002) 'What's so Special about Legal Translation', *Meta* 47(2): 177-85.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New York: Longman.
- Ke, P. (1999) 'Cultural Presuppositions and Misreadings', *Meta* 44: 133-43.
- Mattila, H. (2006). *Legal language*, Oxford: Elsevier.
- Nord, C.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Poon E. (2005) 'The Cultural Transfer in Legal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18(3-4): 307-23.
- Sager, J.C. (1998) 'In Search of a Foundation towards a Theory of the Term', *Terminology* 5: 41-57.
- Šarčević, S.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Saussure, F. (1983)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London: Duckworth.
- Snell-Hornby, M. (1990) *Linguistic Transcoding or Cultural Transfer? A Critique of Translation Theory in Germany*, London: Pinter.
- Soffritti, M. (1987) 'Errori di traduzione - osservazioni e tipologia in riferimento alleleggi della Provincia Autonoma di Bolzano', *Educazione Bilingue* 14: 81-92.
- Tallon, D. (1995)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quelques observations*, Buxelles: Bruylant.
- Tiersma, P. (1999) *Legal Language*, London: Chicago UP.
- Trosborg, A. (1997) *Rhetorical Strategies in Legal Language - Discourse Analysis of Statues and Contracts*,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Weisflog, W.E. (1987) 'Problems of Legal Translation',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12: 179-219.
- Yee, P. (2005) 'Cultural Transfer in Legal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18(3): 307-23.

[Abstract]

Semiotic Approach for Better Understanding of Legal Translation

Yun, Kyung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loy a semiotic approach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legal translation. Although international exchanges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ur life than ever before, Korea has seen little research effort concerning translation of legal texts. Prior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individual translation strategies or methods, and education. The macro discussion on how to understand and approach legal translation is limited.

To date, literal and free translation and the Skopos Theory have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 on legal translation. They als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but are insufficient to explain unique, diverse characteristics of legal translation. Since legal translation is also communication, it can be described as an act of translating signs governed by various layers of cod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signs and the things to which they refer, and the codes they are based on, in order to produce the same legal effect of the source text in the target text. In this study, concepts such as signifier and signified, syntagmatic and paradigmatic, and code are borrowed from semiotics.

The semiotic approach helps overcome disputes deriving from previous discussions and makes it possible to produce so-called 'accurate' legal translation.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legal translation is the very beginning which enables translators to reinforce concerned competence by establishing proper strategies and educational models.

▶ Key Words: legal translation, semiotic approach, signifier and signified, syntagmatic and paradigmatic, code

윤경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kateyun9@gmail.com

관심 분야: 법률 번역, FTA 번역,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